

점자문서 제공요청 등 현황

□ 개요

- 「점자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점자문서를 제공하고 연간 점자문서 요구현황 및 제공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

「점자법」(법률 제21013호, 2025.8.14. 타법개정, 2025.8.14. 시행)

제12조의2(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)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(전자점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□ 점자문서 제공요청 및 실적

- (대상기간) 2025. 1. 1. ~ 12. 31.
- 요청현황 및 제공 실적 해당 없음

